

학생생활관 관생생활 수칙

제1조(목적) 수칙은 학생생활관 관생들이 질서 있는 공동생활을 영위하게 하기 위하여 준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학생생활관의 명칭은 예원예술대학교 학생생활관으로 한다.

제3조(사내생활) 관생은 학생생활관내의 건전한 공동생활과 면학분위기를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삼가야 하며, 특히 사내에서는 폭언, 음주, 흡연, 도박, 그리고 소란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4조(공용물사용) ① 본인의 과실로 인한 화재와 기타 요인에 의한 공용물의 파손과 손실 시에는 개인이 변상하여야 한다.

② 허가 없이 사내의 모든 물품 및 집기의 이동을 금한다.

③ 사내에서는 화재의 위험이 있는 모든 행위나 열기구(전열기구, 난로)의 사용을 금한다.

제5조(보건과 위생) ① 사생은 공동생활에서 요구되는 질병의 예방수칙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질병이 발생한 경우 즉시 치료하여야 하며 모든 치료 경비는 본인이 부담한다.

제6조(생활관 출입과 외박) ① 사생은 사감의 허락 없이 외부인을 방이나 식당 등 사내에 대동할 수 없으며 특히 외부인의 숙박을 금한다.

② 관생은 당일 03:00시부터 다음날 05:00시 사이에는 생활관 출입을 금한다. 단, 시험기간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6.11.17>

③ <삭제 2016.11.17>

제7조(면회) ① 면회시간은 09:00 - 22:00까지로 한다.

② 사행 면회자는 관리과, 사감실에 면회를 신청하여야 하며, 지정된 장소에서만 면회를 할 수 있다.

제8조(사생증) <삭제 2016.11.17>

제9조(관실배정) ① 관실의 배정은 생활관장의 지시를 받아 행한다.<개정2007.09.01.><개정 2016.11.17>

② 관생은 배정된 방을 자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경우 생활관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개정2007.09.01>

제10조(금지행위) 관생은 사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사내에서 음주, 폭행, 도박행위 및 화투, 카드놀이
2. 가무 및 악기연주 등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소음 발생행위
3. <삭제 2016.11.17>
4. 생활관 출입 통제시간에 사내 이탈 또는 귀사
5. 인화물질 및 위험물의 반입 및 보관
6. 전열기구 또는 기타 열기구의 사용(드라이어, 스탠드, 소형카세트, 컴퓨터 제외)
7. 외부인에 대한 숙박 제공
8. 내의, 잠옷 및 맨발 차림의 식당 출입이나 복도 통행
9. 생활관 내에서의 흡연
10. 낙서, 부착물의 첨부, 광고물의 무단 전시 및 배포
11. 허가 없이 집회하는 행위
12. 그 밖의 사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제11조(점검 및 통신) ① 생활관장이나 사감, 기타 관계직원은 실내의 정돈상태나 비품 보존상태, 인원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② 관생은 관계 교직원의 점검 시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지적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관생은 지정된 인터넷 홈페이지 및 관내 게시판의 공고내용을 반드시 알아야 하며, 모든 공지문은 게시 후 3일이 경과하면 모든 관생에게 주지된 것으로 간주하고 미숙독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문제는 본인이 책임진다.<신설 2016.11.17>

④ 관생이 관내에 공고게시 및 문서 배포가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실을 경유하여 관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신설 2016.11.17>

⑤ 개인 우편물 및 택배는 지정된 보관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수령한다.<신설 2016.11.17>

제12조(징계 및 적용) ① 학생생활관 규정 위반한 생활관생에게는 벌점 부여 및 퇴사처분을 하며 이는 다음 학기 관생선발 시 적용하고 제 2항의 기준에 의한 퇴사처리 자는 기숙사 납부금을 반환하지 않는다.

② 벌점기준은 다음과 같다.

항	내 용	벌 점	적 용
1	학칙에 의거 징계 받은 자	퇴 사	
2	기숙사 납부금을 내지 않은 자	퇴 사	
3	소정의 벌점을 받은 자(6점)	퇴 사	
4	전염병에 감염된 자	퇴 사	
5	기타 기숙관생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자	퇴 사	
6	기숙사 밖의 사람을 사감의 허락 없이 출입시킨 자	퇴 사	
7	다른 사람의 방에 사감의 허락 없이 출입한 자	3 점	2회 퇴사
8	사감의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의 물품을 사용한자	3 점	2회 퇴사
9	공공기물을 파손한 자	3 점	2회 퇴사
10	화재 위험물질을 기숙사내에 들어온 자	3 점	2회 퇴사
11	흡연, 음주, 고성방가, 소란, 기타 경범에 속하는 행위를 한 자	3 점	2회 퇴사
12	외출금지 시간을 어긴 자	3 점	2회 퇴사
13	기숙사 규정시간을 까닭 없이 지키지 않은 자	2 점	3회 퇴사
14	물품의 무단 이동과 가공 행위	2 점	3회 퇴사
15	낙서, 부착물의 첨부, 광고물의 무단 전시, 배포행위	2 점	3회 퇴사
16	지시사항 불이행 자	1 점	6회 퇴사
17	사내 취사와 식사도구 보관	1 점	6회 퇴사

<표개정 2016.11.17.>

부 칙(2000. 3. 2)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1. 1)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10. 6)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11. 18)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9. 1)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2. 1)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11. 17)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